

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원 계획 공고

「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.

2026. 1. 22.

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

1. 용자지원 규모 : 5억원

2. 용자대상 및 조건

- 용자대상 :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
- 용자한도

용자종류	대상	용자한도액
시설개선 자금	식품제조·가공업소	7천만원
	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소	7천만원
	식품접객업소 (단란주점영업·유형주점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)	3천만원
	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	1천만원
육성(운전) 자금	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	3천만원
	위생등급 지정업소	3천만원
	향토음식점	3천만원

- 용자이율 및 상환기간 : 연 1%, 4년(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)

- 사용범위
 - 시설개선자금 :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 구입설치
 - 운영(육성)자금 : 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
 - ※ 필요경비란 인건비, 용자금 상환금을 제외한 경비에 한함

3. 제외대상

- 휴업·폐업 중인 업소
-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
-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
- 기금 부당사용으로 용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
- 용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용자를 받은 업소
-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
 - ※ 도내 타 기금(농어촌기금, 관광진흥기금, 중소기업육성자금 등)에서 용자를 받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용자 중복지원 불가

4. 용자 취급은행 : 농협 중앙회, 제주은행 각 영업점

5. 용자신청 :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(제주시 ~~식품안전과~~ / 서귀포시 ~~위생관리과~~)에 신청

- 신청기간 : 연중(평일 09:00 ~ 18:00)
- 구비서류

구분	목록
공통	신분증(본인확인용) [서식1] 용자금신청서 [서식2] 사업계획서 [서식3]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서식4]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
시설개선자금	견적서
육성(운전)자금	지정서(우수/모범업소, 위생등급 지정업소, 향토음식점)

○ 신청절차

-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(농협, 제주은행) → 융자신청(행정시) → 사업 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 → 지원결정 통보

6. 기타문의

○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(☎ 710-2943)

○ 제주시 식품안전과(☎ 728-1453)

○ 서귀포시 위생관리과(☎ 760-2422)

- ※ 영업장 소재지가 제주시인 경우, 제주시청 식품안전과 방문
서귀포시인 경우,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방문

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□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관한 일반 사항

- 수집 및 이용 목적 : 식품진흥기금 용자 신청에 따른 신청자 개인정보 식별 및 정보제공 등
- 수집 항목 : 성명, 주소(소재지), 연락처, 사업자등록번호, 허가번호
- 보유 및 이용기간 : 추천서 및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보존기간 종료일까지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즉시 삭제함

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,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,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 · 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업 소 명 :

대 표 자 :

(인 또는 서명)

귀하

사업 이행 약속서

「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영업장 위생관리 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용자 받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.

1. 용자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하겠으며, 용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입니다. 단,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.
2. 용자금을 받은 후 본 업소를 폐업·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.
3.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(다만,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지체 없이 용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.
4.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 또는 우수업소 등 운영자금을 용자 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.
5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용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.
6. 사업수행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귀청의 지시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청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회수(조기상환)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